##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25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조응천

권칠승·박광온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자, 관제업무 종사자,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 써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해당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거나 미흡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 련하여,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1조의10 및 제69조제4항·제5항, 제75조제10호·제11호, 제79조제4항제2호의4·제3 호의4·제13호의2 신설 등).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2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 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69조제7항"을 "제6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 11.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법률 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호의6 중 "제69조제5항"을 "제69조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4항에 제2호의4·제3호의4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13의2.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
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	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
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u>된다.</u>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
여 금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여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관제	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
자격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	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
<u>니 된다.</u>	<u>서는 아니 된다.</u>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① ~ ③ (생 략)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철
	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
	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u>아니 된다.</u>
<u>&lt;신 설&gt;</u>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기술자가 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
	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u>④</u> ~ <u>⑦</u> (생 략)	<u>⑥</u> ~ <u>⑨</u> (현행 제4항부터 제7

5. • 6. (생략)

② (생략)

-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 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 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u>제69조제7항</u>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9. (생 략) <신 설>

<신 설>

법률 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까지와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75조(청문)		
1. (현행과 같음)		
2		
레스이크 레이션		
<u>제69조제9항</u>		
3. ~ 9. (현행과 같음)		
10.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		
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철도		
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법률 제1745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1. ~ 2의5. (생략)
- 2의6. <u>제69조제5항</u>에 따른 철도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 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 전전문기관의 임직원
- 3. (생략)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벌칙) ① ~ ③ (생 략) 저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2의3. (생 략) <u><신 설></u>
- 3. ~ 3의3. (생 략) <신 설>

4. ~ 13. (생 략) <u><신 설></u>

1. ~ 2의5. (현행과 같음) 2의6. 제69조제7항
0 (=1 -11 -1 o)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39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b>4</b>
<u>.</u>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
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
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4.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
	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
	한 사람
14. • 15. (생 략)	14.・1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